

「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박춘희 의원
- 제안일자 : 2026. 02. 06.
- 회부일자 : 2026. 03. 12.
- 상정일자 : 2026. 03. 13.

2. 제안이유

- 현재 운영중인 ‘평창군 어르신 이·미용비 지원사업’이 「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6조를 근거하여 시행중이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지원 및 운영 내용을 명확히 하여 단독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며,
- 우리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비 및 이·미용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위생관리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,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지원근거 마련 (안 제2조)
-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(안 제3조~제4조)
- 카드 사용 및 카드시스템 운영·위탁 (안 제5조~제6조)
- 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 (안 제7조)
- 사업비의 정산 (안 제8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에서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,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고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 복지를 증진하고, 부정 사용 방지와 환수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4조에서는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 금액 등 지원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,
- 안 제5조에서는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- 안 제6조에서는 바우처카드시스템 운영·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사업주가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,
- 안 제8조에서는 사업비의 정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5. 종합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어르신들의 위생권을 보장하고,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과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□ **지방자치법**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3. 8. 8., 2024. 1. 9.>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~ 다. (생략)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□ **노인복지법**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6조(경로우대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·농원·박물관·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.

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.